

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2022. 4

1. 개정이유

법령 개정(화물유통촉진법 → 물류정책기본법, '08년) 등에 따라 국제
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거 법령 및 업종 변경 등에 따라 용어를 수정 등

구 분	현 행		개 정(안)
근거법령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 제2항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제11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명칭변경	복합운송주선업		국제물류주선업
	건설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타 수정	별지 서식	19 주 소 / 성 명	20 주 소 / 성 명
	주어 명시	(제8조) 채권변제처리 요청서를 접수한 때 ~(생략)	(제8조) 시·도지사는 채권변제처리 요청서를 접수한 때 ~(생략)
		(제9조) 보험금을 청구한다	(제9조) 채권단은 보험금을 청구한다
		(제10조) 변제관계 절차를 발는다.	(제10조) 보증보험회사는 변제관계 절차를 발는다.
		(제12조) 보험금을 공탁할 수 있다.	(제12조) 보증보험회사는 보험금을 공탁할 수 있다.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3년간의
존속기간 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복합운송주선업보증보험등가입금운영규정 일부개정안

복합운송주선업보증보험등가입금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복합운송주선업보증보험등가입금운영규정”을 “국제물류주선업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중 ““보증보험가입금”이라 함은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시행령 제1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를 ““보증보험 가입금”이라 함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0조의2 본문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복합운송계약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자”를 “국제물류주선계약에 의한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보증보험 가입기간내”를 “보증보험 가입기간 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복합운송주선업자는 시행령 제11조제2항 별표1의 규정”을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영제30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시행령 제11조 별표1의 규정”을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영제30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파트너”를 “협력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복합운송주선업자는 개인적인 사채”를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개인적인 채무”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복합운송주선업자”를 “국제물류주선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 신고”를 “따른 신고”로, “의한 각서”를 “따른 각서”로 한다.

제8조 중 “채권변제처리요청서”를 “시·도지사는 채권변제처리요청서”로 한다.

제9조 중 “제8조”를 “채권단은 제8조”로, “의하여”를 “따라”로,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를 “보증보험회사는 제9조”로, “의하여”를 “따라”로, “밟는다”를 “밟는다”로 한다.

제11조 중 “의하여”를 “따른”으로, “법률”을 “다른 법률”로 한다.

제12조 중 “채무”를 “보증보험회사는 채무”로, “관란하여”를 “관련하여”로, “대하”를 “대한”으로 한다.

제1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존속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각 서

채권액 : 일금 원정(₩)

위 금액은 와 거래중 발생한 본인의 채권액(용도:)으로서
채권단에서 결의한 내용과 채무이행에 관한 귀 시·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은 물론 귀 시·도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하지 아니할 것을 각서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 지 사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복합운송주선업보증보험등가입금</u> <u>운영규정</u>	<u>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u> <u>운영규정</u>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u>화물유통</u> <u>촉진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u> <u>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u> <u>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u> <u>가입금의 운영에 관한 절차를</u> <u>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정 의) 이 규정에서 “<u>보증</u> <u>보험가입금</u>”이라 함은 <u>복합운</u> <u>송주선업자가 시행령 제11조 별</u> <u>표1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u> <u>회사에 가입한 금액을 말한다.</u>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u>복합</u> <u>운송계약에 의한 복합운송주선</u> <u>업자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보증</u> <u>보험 가입기간내에 발생한 채권</u> <u>의 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u> 제4조(보증보험의 가입) ①<u>복합운</u> <u>송주선업자는 시행령 제11조제</u> <u>2항 별표1의 규정에서 정하는</u>	제1조(목 적) ----- 「<u>물류정</u> <u>책기본법</u>」 제43조제3항 및 <u>같</u> <u>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u> <u>에 따른</u> ----- -----. 제2조(정 의) ----- “<u>보증보</u> <u>험 가입금</u>”이라 함은 <u>국제물류</u> <u>주선업자가 「물류정책기본법</u> <u>시행령</u>」 (이하 “<u>영</u>”이라 한다) <u>제30조의2 본문의 규정에 따라</u> -----. 제3조(적용범위) ----- <u>국제물</u> <u>류주선계약에 의한 국제물류주</u> <u>선업자</u>----- <u>보증</u> <u>보험 가입기간 내</u>----- -----. 제4조(보증보험의 가입) ①<u>국제물</u> <u>류주선업자는 영 제30조의2</u>----- -----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가입증명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은 시·도지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채무의 범위) ①복합운송주선업자가 시행령 제1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가입금으로 변제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4. 해외 파트너에 대한 미지불 채무
5. (생략)

②복합운송주선업자는 개인적인 사채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증보험가입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채권단 구성) ①복합운송주선업자의 도산 등으로 제5조제1항 각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채권자는 채권단을 구성한다.

② (생략)

-----.

②----- 따른 -----

-----.

제5조(채무의 범위) ①국제물류주선업자가 영 제30조의2-----

-----.

1. ~ 3. (현행과 같음)
4. --- 협력회사-----
--
5. (현행과 같음)

②국제물류주선업자는 개인적인 채무----- 따른 -----

-----.

제6조(채권단 구성) ①국제물류주선업자-----

-----.

② (현행과 같음)

③채권단 대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채권단 구성원인 각 채권자로부터 별지서식에 의한 각서를 받아 이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심 사) 채권변제처리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채권이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채무인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체없이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채무의 변제)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의 수령이 확정된 때에는 채권단에게 이를 통보한 후 변제관계 절차를 밟는다.

② (생 략)

제11조(변제 우선순위의 무차별)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할 경우에는 법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채무간의 변제순위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③-----
-- 다른 신고-----

----- 다른 각서-----

--.

제8조(심 사) 시·도지사는 채권변제처리요청서-----

-----.

제9조(보험금의 청구) 채권단은 제8조-----
--- 따라 -- 지체 없이-----
-----.

제10조(채무의 변제) ①보증보험회사는 제9조-----
---- 따라 ----- 밟는다.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변제 우선순위의 무차별) ----- 따른 -----
----- 다른 법률-----

-----.

제12조(보험금의 공탁) <u>채무</u>의 변제와 <u>관련하여</u> 이의를 제기하는 이해당사자가 있을 때에는 이에 <u>대하</u> 해결이 있을 때까지 보험금을 공탁할 수 있다. 제13조(유권해석)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u>건설교통부장관</u>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u><신 설></u> <u><신 설></u>	제12조(보험금의 공탁) <u>보증보험</u>회사는 <u>채무</u>----- ---- <u>관련하여</u> ----- <u>대한</u> ----- -----. 제13조(유권해석) ----- ----- <u>국토교통</u> <u>부장관</u>-----. 제14조(존속기한) 「<u>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u>」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 <u>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u> <u>부</u> <u>칙</u> <u>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u>
---	---